2027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교복 제조·구매계약 특수조건

2027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교복 제조·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교장(이하 "학교"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 ○○교복사 대표 ○○○(이하 "공급자"라 한다)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.

제1조(구매 수량)

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.

② "공급자"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(신입생, 재학생, 전입생)이 있을 경우,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,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.

③ "공급자"는 "학교"의 학생(신입생, 재학생, 전입생)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조(납품기한 및 장소)

① "공급자"는 계약물품(교복)을 "학교"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,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5월 14일까지 전량 납품하고,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"공급자"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(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)을 제출하여야 한다. (낙찰단가×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)

제3조(교복 치수 측정)

① "공급자"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·납품하여야 한다.

② "공급자"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(판매장 등)와 시간 등을 "학교"와 협의하여 정하되,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.

③ "공급자"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,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.

제4조(납품 전 확인)

① "공급자"는 계약체결 후 "학교"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(1차),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(2차)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"공급자"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"학교"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.

③ "학교"는 "공급자"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"공급자"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.

④ "공급자"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"학교"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"학교"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.

⑤ "공급자"는 "학교"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(겉감과 안감)에 대한 공인인정(시험)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(한국의류시험연구원, FITI시험연구원 등의 Q-마크 검사 기준 권장)를 납품일까지 "학교"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"공급자"의 부담으로 한다.

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"공급자"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'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'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.(비용은 "공급자" 부담)

제5조(교복의 상태)

① 원단은 오염, 파열, 절상이 없어야 한다.
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, 염색불량,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③ 땀의 뜀,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,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,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~6땀으로 박아야 한다.
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.
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, 밑실의 당겨짐,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.
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.
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, 비침이 없어야 한다.
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.

제6조(검사·검수)

① **"공급자"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.**
② "공급자" 는 "학교" 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,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.
③ **"**공급자"는 교복(동복·하복)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, 원단의 재질,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, 수선을 받을 수 있는 "공급자"의 연락처, **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.**
④ "학교" 의 검사·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.

제7조(품질검사)

① **"학교"는 "공급자"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**
② **"학교"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"공급자"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"공급자"는 "학교"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**

제8조(교환 및 제품의 하자)

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,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,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. (단, 개인이 변형 시 해당 되지 않음)
② **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, 교복 구매특수조건, 견본과 불일치(원단, 봉제상태 등)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"학교"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, "공급자"는 지체 없이 규격(사양서, 치수)과 특수조건,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모든 비용은 "공급자"의 부담으로 한다.**
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'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'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.

제9조(하자보증) 공급자"는 납품시점에 '하자이행보증보험'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 (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)

제10조(사후관리)

① "공급자"는 "공급자"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.
② "공급자"는 교복 납품 후 A/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, 납품 후 **1년간 무상 A/S**를 해주어야 한다.
③ "공급자"의 교복 납품 후 "학교"의 학생의 귀책사유(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)로 교복이 손상되고 "공급자"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"공급자"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.

④ “공급자”는 납품 후 “학교”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(약도)를 제출해야 한다.
⑤ 지정한 A/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“공급자”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/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, “학교”에 통보해야 한다.
⑥ “공급자”는 A/S 요청 시 신속·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.

제11조(지연배상금) “공급자”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.8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“학교”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“공급자”에게 지불한다. 단, “학교”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대금청구) “공급자”가 납품 후 “학교”의 검사·검수가 완료되었을 때, “공급자”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3일 이내(토·공휴일 제외)에 송금한다.

제13조(금액변경) “공급자”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.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4조(계약불이행 등)
① **“공급자”의 고의,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, 계약의 불이행,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“공급자”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**
② “공급자”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15조(하도급 금지)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.

제16조(디자인 소유권)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.

제17조(계약 내용 해석)
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“학교”와 “공급자”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“학교”와 “공급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소송관할)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, 다툼이 있을 때에는.“수요자”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26. 09. 09.

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장(직인생략)